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0월 23일, 박지혜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0월 2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3.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1차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2026.3.1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3.12.)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지혜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또는 출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으나, 해당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이 제한됨.

그런데 최근 글로벌 공급 과잉 등으로 석유화학산업이 위기에 직면하여 관련 기업들의 사업재편이 필요한 상황인데, 대규모 장치산업 등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자발적이고 실효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라도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예외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에 속한 기업에 대해서도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 및 산업 생태계 혁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 단서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사업재편시 자금지원 허용

개정안은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합병·분할 등 신설기업 포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되더라도 사업재편 유형이 공급안정 사업재편, 산업위기지역 사업재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자금지원) ①·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은 승인기업이 제9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또는 제12조에 따른 변경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할 당시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④ (생 략)	제28조(자금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다만,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승인기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4조는 동 법률(이하 “기업활력법”)의 적용대상을 공급안정

사업재편(제1호), 미래 사업재편(제2호) 및 산업위기지역 사업재편(제3호), 총 3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음.

[표 2] 「기업활력법」 적용대상 구분

제4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공급안정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 가.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사업재편 나. 공급망 위협 해소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생산, 저장 및 대체기술 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망 안정 활동을 하는 사업재편 2. 미래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으로서 제6조제12항에 따른 사업재편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로부터 미래 사업재편 판정을 받은 기업 3.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에 속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4. 삭제 5. 삭제

그리고 현행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1]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된 기업에 대해서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및

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8조(자금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또는 출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인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시설개체 등 설비투자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에 수반되는 공장의 신설·이전·증설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공장의 신설·이전·증설을 위한 입지 확보, 공장 건축,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
3. 승인기업의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출시를 위한 경영혁신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는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등의 정책금융기관에서 융자·보증시 금리·요율 등을 우대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요건을 완화하거나 설비보조금 지원비율 2%p 가산, 자산매각[2] 등을 지원하고 있음.

다만, 현행법 제28조제3항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3]으로 지정될 정도로 규모가 큰 대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재편을 위한 절차간소화 등 법률상 특례는 부여하되, 이에 필요한 자금은 자구노력을 통해 조달하도록 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해왔음.

그러나 최근 구조조정 대상으로 거론되는 석유화학산업 분야는 대규모 장치산업으로서 이미 대출규모가 상당하다는 점[4] 등을 고려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도 정책적으로 자금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2) S&LB 방식으로 캠코에서 유동성 공급, '23년 500억 규모

3)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설명 요약(https://www.ftc.go.kr/www/contents.do?key=696)

- <u>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자산총액이 GDP의 0.5% 이상인 기업집단</u>
-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5월 1일 대기업집단(대규모기업집단-공시대상집단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소속 계열회사, 일정 규모 이상의 지주회사 및 그 자·손자·증손회사)을 지정하고,
- 상호출자 금지,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등을 통해 지배구조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유·출자 구조의 건전성을 유지하며 계열사 간 부당지원 및 내부거래를 방지하고 있음

4) "구조조정 미루는 석화업계에…정부, 채권단 통해 33조 돈줄 압박", 2025. 9. 24.,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business/11428419?utm_

이에 개정안은 과잉공급 해소 등을 위한 공급안정 사업재편,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침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재편의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또는 출연 등의 지원을 허용하여 효과적으로 사업재편을 뒷받침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법무부는 개정안과 같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금지원에 예외를 두는 단서조항 신설에 대해 구체적 기준 및 절차적 통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

개정안과 같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해서도 사업재편 자금지원을 허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된 동법 개정안이 우리 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5]되어 있거나 회부될 예정[6]이므로, 이를 함께 병합심사하여 적정한 예외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

5)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13033호, 2025.09.16., 정진욱 의원 대표발의

6)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13666호, 2025.10.22.,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7. 기타 사항

없 음.